

# 2015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안내문

중구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계획』에 의거 2014년 지정한 중구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기관 재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사업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2014년도 지정된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에 대하여 연장 재심사를 실시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2. 재심사 개요

- 사업명 :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 재심사 대상 : 2014년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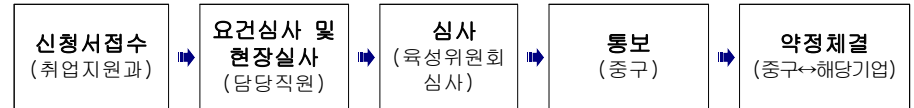
연번	기업명	소재지	지정일	비고
1	(주)해라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빌딩 2층	2014. 2. 25	사회서비스 제공형
2	(주)에이스러닝	충무로4가 306 남산센트럴자이 비동 213~5호	2014. 2. 25	일자리제공형

- 재심사 대상 사업기간 기준 : 2014. 3 .1 부터 2015. 2. 28(1년)
- 재지정 기간 : 2015. 3. 1 ~ 2016. 2. 28(1년)
- ※ 새로 체결하는 지원약정 개시일은 직전 약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 3. 재심사 요건

- 최초 지정시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사업계획서 내용 이행 여부

## 4. 재심사 절차



## 5. 제출서류

-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서식2]
- 사업계획서[서식3]
- 지정요건 준수 확인서류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제출
    -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2) 유급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3) 4대보험 가입증명서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재무제표 등)

※ 관련 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5)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 확인서, 사회적목적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등)

6)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관만 제출)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5.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심사 신청서,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전체를 저장한 CD 1매 제출

## 6.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15. 2. 11(수) ~ 2. 12(목) (2일간)

○ 접수장소 : 중구 별관3층 취업지원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미제출시 재심사 포기로 간주

## 7. 지정결과 통보

○ 일 시 : 2015. 2월 중

○ 방 법 : 개별 통보

## 8. 기타사항

○ 심사 절차와 방법은 중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2014년도 지정된 중구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기한이 2015. 2. 28자로 종료됩니다.

○ 본 심사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중구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관)는 사전에 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제반 책임은 신청 단체(기관)에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 취업지원과(☎02-3396-5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중구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신청서			
<b>◆ 신청기관 개요</b>			
기관명		지정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Tel. (Fax. )	담당자	성명 : (e-mail :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조합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 내 사업단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전체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주된 사업내용			
연계기관명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기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b>◆ 추진 실적</b>			
항목	재심사 신청일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당시
근로자 고용현황	전체근로자 명(취약계층 명)		전체근로자 명(취약계층 명)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총수혜자 명(취약계층 명)		총수혜자 명(취약계층 명)
매출액/자본금	원/ 원		원/ 원
기타 변경사항 (조직형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재심사일 현재)	전체 근로자수(A)	지원인원									
		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B)	취약계층 근로자수(C)	재정지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참여근로자 월별현황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참여자										
	취약계층 참여자										
재정현황	총수입 (A)	영업수입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영업수입 비율(B/A)			
	원	원	정보보급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				
	(100%)	( %)	( %)	( %)	( %)	( %)	%				
<b>◆ 신청내용</b>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일반 명(최대 4인)										
사업명											
사업분야											
※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 사업성과 작성방법 • 전체 참여자 / 취약계층수 :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영업수입 : 재화·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서식 2】

신청기업·단체 현황(소개서)						
기관명			설립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소재지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연락처	대표자	핸드폰 : , E-mail :				
	담당자	성명 : , 핸드폰 : , E-mail :				
근로자 현황	전체 유급근로자수(A)	* 취업계층 근로자 수(B)	취업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중구 재정지원 인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명	%			
	취업계층 현황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최대 : 원, 최저 : 원)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업계층 수혜자 수(B)	취업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실적	노무비 지출액(A)	매출액(B)	매출액 비율 (B/A)			
	원	원	%			
이익재분배 (해당기업/단체)	이익잉여금(a)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b)	재투자비율 (b/a)			
	원	원	%			
재정 구조 (백만원)	총수입(A+B+C+D) ※저출산·저유망지역 등으로 확 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기타수입(D) ( )	
	백만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07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기재요령

\*사업분야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단체 내 사업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 사회적목적실현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 취업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서식 3】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관명		인증(지정)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제공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제공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사업수행시 필요한 도구 및 주된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 - -		
	1인당 급여액	합계(A+B)	지원금(A)	추가액(B)

참여근로자 훈련계획	훈련명	훈련기간
	훈련내용	- - -
	최종목표	자격증 취득여부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방안 제시	
수익금 사용계획	금액 및 비율 표기 및 근거제시	
◆ 향후 인증계획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미용, 육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❶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소득 기준 금액

☞ 관련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이 다음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가구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예시)		
	60%	70%	100%	60%	70%	100%
1인	863	1,007	1,438	25,920	30,240	43,208
2인	1,603	1,870	2,672	48,170	56,200	80,285
3인	2,385	2,783	3,976	71,680	83,620	119,467
4인	2,749	3,206	4,581	82,580	96,350	137,646
5인	2,856	3,332	4,760	85,810	100,110	143,024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 만 55세 이상중 전국가구 월평균 70%이하 가정에 한함  
(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준용)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확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